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01시 44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등록현황 | 3 |
| 시설의 이용 | 3 |

시설의 이용

2014.04.17 조회수 630 등록자 박종열

| | |
|----------|--|
| 관리번호 | 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1 |
| 담당부서 | 사회복지과 |
| 상위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|
| 조례 |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|
| 유형 | 1호 - 허가 |
| 등록사유 | 사회복지 |
| 법령공표일 | 신설규제 |
| 존속기한 | 2012-12-31 |
| 규제시행/폐지일 | 2012-12-31 |
| 규제내용 | 제4조(시설의 이용)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시설이용자"라 한다)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0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62 >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